

USDA Organic(유기농) 제도 및 수입통관절차

1. 미국의 USDA 유기농 제도

□ 미국의 USDA Organic(유기농) 정의

- 유기농이란? 재배기간중 3년간 합성비료, 방사선처리,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의 농사방법과 가공방법등을 규정. 또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성분의 95% ~100% 가 유기농 성분이어야 함.
-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식품들의 재배 및 경작을 관할하며 미 농무부내에 NOP(National Organic Program)프로그램으로 유기농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책임지고 있음.





□ 미국 유기농 시장 동향

-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웰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텍사스(Texas)를 중심으로 유기농 식품 전문점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유기농 식품 전문점 홀푸드(Whole Foods)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에 387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으로 성장
- 미 유기협회(Organic Trade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유기농 식품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실제로 미국 내 유기식품에 대한 수요는 매년 두 자리 수의 상승률 기록
- 뿐만 아니라 유기농 이유식 및 유아용 식품은 농약이나 성장 호르몬, 항생제, GMO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해마다 시장 규모 확대
- 유기농 제빵과 곡물 부문은 가정에 늘 상비하는 식품군으로, 식품업체들은 건강 트렌드에 맞춰 현미빵, 통밀빵 등 건강에 좋은 제품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유기농 음료 시장도 웰빙 트렌드의 큰 수혜 시장의 하나로서, 건강과 영양에 대한 고령화되어가는 베이비 부머 세대와 건강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유기농 커피 시장 역시 2017년 전체 유기 음료시장의 24%를 차지하며 3억 달러에 근접함.
- 온라인 식료품점 경쟁 또한 가열됨에 따라 릴레이푸드(Relay Foods), 프레쉬 다이렉

트(Fresh Direct), 도어투도어 오가닉(Door-to-door Organics) 등의 온라인 식품 매장이 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요 소비처로 자리 잡고 있음

- 온라인을 통한 미 식품 매출은 2023년에는 총 식품판매 시장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 미국 USDA(농무부) 유기농인증(N.O.P) 표준 라벨링 4가지

구분	의미	설명
	100% 유기농 성분인 제품	유기농법만 사용하고 유기농 재료만을 포함한 제품은 '100% 유기농' 제품으로 인정받아 USDA마크 뿐만 아니라 100% Organic 글귀 사용 가능함.
	95% 이상 유기농 성분인 제품	최소 95% 이상의 성분이 유기농인 제품. USDA의 유기농 인증표시와 인증마크 사용 가능함.
	적어도 70%이상 유기농 성분인 제품	70% 가량 유기농 재료를 함유한 제품일 때 사용가능하며 Made with organic ingredients'라는 문구를 써야 한다. 이때 USDA 유기농 마크 사용 절대 불가함
	70% 미만 유기농 성분인 제품	70% 미만 함유한 제품은 제품 패키지에 'Organic'이라는 용어를 절대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성분표에 함유하고 있는 유기농 원료를 표기할 수 있음.

□ 미국 유기농 인증기관

- USDA(미 농무부) 가 인정하는 인증기관
 - 유기농 인증은 미국 농무부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약 80개의 기관이 인증업무와 사후관리를 담당
 - USDA 지정 인증기관 조회: <https://www.ams.usda.gov/services/organic-certification>

□ 한국, 미국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협정을 통한 수출절차

- 법적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는 외국정부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등성 인정 가능 (상호주의 원칙 적용)
- 발효 : 2014. 7. 1.
- 주요 내용 :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 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 가능함.

1. 동등성 인정 국가: 미국

2. 동등성 인정 범위

- 가. 한국(또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 나.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상의 분류기준 적용
- 다.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 라.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증 범위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원료로 제증. 가공한 유기가공식품으로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 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 별도 협의 시까지

4. 동등성 인정의 제한 조건

- 가. 항생제(스트렙토마이신, 테트라시클린)가 사용된 사과·배가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한국에서,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이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미국에서 각각 유기 표시 불가
- 나. 화학합성농약, 유전자변형농산물, 방사선조사 등 금지된 물질(방법)은 사용할 수 없음
- 다.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 적용
- 라. 라벨에 대한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규정 적용
- 마. 동등성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인증품은 자국의 인증로고 또는 상대국의 인증 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양국 로고를 함께 사용 할수 있음.



한국 유기제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입증명서([NOP import certificate](#))를 첨부하여야하며, 미국 유기제품의 한국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요구하는 수입증명서([NAQS import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함

* 수입증명서는 수출국의 인증기관에서 발급

[참고 1] 미국으로 수출되는 유기제품의 표시 사례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유기로고 또는/그리고 유기 강조표시 사용 가능(may).

정보 표시면에는 반드시 별표(*)또는 다른 마크를 사용하여 유기원료 사용에 대해 표시해야 함.

Ingredients:
- Lotus Leaf

Recommended Steeping Directions:

Pour 10-15oz of fresh boiling water over one(1) tea bag. Steep 1-2 minutes. Remove tea bag. Serve and enjoy. Each tea bag makes at least 2 cups of tea!

To enjoy COLD, follow the instruction above to steep and brew as hot. Keep tea bag in water until cooled to warm/room temperature. Refrigerate immediately!

Preserve tea in glass containers to keep fresh taste lasting longer. Enjoy the smooth tasting and thirst quenching cold tea as an alternative to water.

Note: Leaving steeped tea at room temperature too long can make tea become sour quickly.

Disclaimer: These teas are not medicines or therapies. They are comforting and cleansing beverages not intended to treat, cure, diagnose, or mitigate any disease or abnormal condition.

MADE IN KOREA
Best Enjoyed by:



□ 미국 통관절차

수입 절차 6단계		
1	수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선 발굴 • 계약 진행
2	서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 서류 5가지 준비 • 통관서류 5가지 준비 • FDA 등록 필수(한국식품연구원에서 대행가능) • 보증금(Customs Bond) 준비 • 기본 라벨링 요건 확인
3	선적 /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적 24시간 전, 수입국(미)의 세관국경보호국에 수입허가 증빙서류인 수입자 화물내역서(ISF; Importer Security Filing)와 적하목록 제출
4	수입신고 / 검사 및 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 및 수입허가: 미 FDA에서 진행 • 검역: USDA 소속의 식품안전검사국(FSIS)과 동식물검역국(APHIS)에서 진행 • 보증금 납부
5	세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납부: 세관 반입 후 10일 이내 납부
6	통관 / 국내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안전검증 제도(FSVP): 본 제도를 준수할 경우 신속한 통관 가능

미국 수입 부대조건					
	서류 준비	항만, 터미널 처리	통관수속	내륙운송	필요서류 (5가지)
소요기간	2일	1일	1일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하증권(B/L) • 상업송장(CI) • 세관수입신고서(CID) • 포장명세서(P/L) • 화물인도지시서(D/O)
소요비용	205달러	420달러	90달러	600달러	

1. 수출 계약

√ 거래선(바이어) 발굴

B2B 거래사이트, 트레이드 디렉토리, 각 국의 무역 관련기관 또는 전시회를 통해 바이어를 발굴. 필요시 신용조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기업인지 확인

√ 계약 진행

충분히 수출 가격을 검토한 후 구매자에게 희망조건을 명기한 제안서(비즈니스 오퍼)를 제출. 구매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승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몇 차례 카운터오퍼를 거친 후 계약 성립. 당사자들은 최종적으로 양측 간에 합의된 사항에 따라 가격, 선적, 결제, 포장 등의 조건을 명시한 수출 계약 체결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란?

판매자가 제안한 오퍼 내용에 대해 구매자가 가격, 수량, 선적일 등 기타 조건을 수정하여 다시 제시하는 오퍼를 말함

2. 서류준비

√ 수입식품 신고서류 준비

* 수입식품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선하증권(B/L)
- 상업송장(C/I)
- 포장명세서(P/L)
- 수입허가증빙서류(ISF: Importer Security Filing)
- 한-미 FTA 특혜신청품목의 경우, 수입신고 서식 7501의 29란(HTS)에 'KR' 표기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인증서 사본 및 NOP Import Certificate 제출

* 수입식품 신고 시 상업송장에 기재해야 할 내용

- 물품이 도착한 통관항

- 물품이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서 판매되기로 한 경우 그 시간과 선적지, 송하인과 수하인의 성명
- 물품의 구체적인 명세, 품명, 품질등급, 화인, 번호, 물품의 중량, 용적 및 수량
- 물품이 판매되었거나 판매되기로 합의된 경우 구매가격
- 통화의 종류
- 원산지

√ 5가지 통관 기본서류 준비

* 수입식품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선하증권(B/L)
- 상업송장(C/I)
- 포장명세서(P/L)
- 세관수입신고서(Customs Import Declaration)
-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3. 선적/운송

√ 수출통관

수출통관은 기업이 직접 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진행 가능. 관세사는 세관에 수출신고 후 받은 수출신고필증을 기업이나 포워딩 업체에 교부. 기업이 수출통관을 직접 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이용하면,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절차를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www.unipass.or.kr) 으로 처리 가능

√ 운송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에 따라 수출업자가 수입업자가 포워딩 업체를 지정하고 운송을 의뢰받은 포워딩 업체는 내륙운송 및 해상운송을 통해 목적지까지의 운송 전 과정 혹은 일부과정을 책임짐

√ 선적 24시간 전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에 따라 수출업자가 수입업자가 포워딩 업체를 지정하고 운송을 의뢰받은 포워딩 업체는 내륙운송 및 해상운송을 통해 목적지까지의 운송 전 과정 혹은 일부과정을 책임짐

√ 화물 도착 24시간 전, 적하목록을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반드시 제출

운송업자는 '24 Hour Rule'에 근거하여 화물전자신고시스템(AMS)을 통해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하루 전, 적하 목록을 세관국경보호국에 제출해야 함. 적하목록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을 시 양하 금지 조치가 내려짐

4. 수입신고 / 검사 및 검역

√ 상세 수입절차 5단계 및 단계별 사항

- ① 수입신고서류 및 보증금 준비
- ② FDA에 신고서류 제출
- ③ 서류 및 샘플 검사 시행
- ④ 품목별 검역 시행
- ⑤ 보증금 납부 / 입국 허가

=> 수입자는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관세사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청의 통관을 위한 보증금 준비. 수입 식품의 경우, 세관국경보호국 내 FDA에 수입신고서를 접수하고 수입허가 요청. FDA는 신고된 서류를 검토한 뒤 수입식품 검사를 시행. FDA에서 검사가 필요 없는 식품이라 판단할 경우, 즉시 입국 허가. 검사가 필요한 식품의 경우, 샘플 조사가 시행되며 안전 적합 판정을 받으면 즉시 입국이 허가되며 불합격 시 입국 거부. 불합격 판정에 대해서는 수입업체의 이의제기 가능.

3) 시사점

- 미국 유기시장의 동향은 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웰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식품 전문점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미 유기협회(Organic Trade Association)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유기농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유기농시장은 2015년 전년대비 37억 달러의 매출이 증가했으며 2016년에 470억 달러를 기록했음. 이는 미국 전체 식품 판매량의 5.3%에 달하는 수치임.
- 한국, 미국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협정을 통하여 미국에서 국가유기프로그램(NOP)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은 유기 가공식품은 자국의 인증 로고 또는 상대국의 인증 로고를 선택하여 수출하기에 편리해졌음.
- 미국내에서 USDA인증 로고가 유.무 상태에 따라 판매량은 물론 소비자들이 구매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한국 식품 수출업체들도 유기표시요건에 맞추어 준비하면 좋을 듯 함.